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관한 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281
----------	-----

제안년월일 : '94. 8. 29

제안자 : 총무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집행기관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공개일시, 장소, 공개방법 및 수수료금액, 납부방법등을 청구인에게 통보도록 신설 하였으며
- 행정정보의 년도별 공개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년도별 적용범위를 설정하여 운영도록 함.

2. 수정주요골자

- 안 제10조(공개의 가부결정) 제4항을 신설함.
④ 집행기관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장소, 공개방법 및 수수료금액, 납부방법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칙 제2항을 신설함.
① (적용범위) '92년이후 생산, 수집된 정보는 '94년 9월1일부터 '91년 이전 생산수집된 정보는 당해정보 목록이 작성된 때부터 공개한다. 다만, '91년 이전 정보로서 이미 정보로서 이미 목록이 작성되어 있는 정보나 목록이 작성되지 않은 정보라도 당해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관한 조례안에대한수정안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0조(공개의 가부결정) 제4항을 신설함.

- 내용 별첨

- 안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안 제18조(예외규정) 이 조례는 다른 관계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수정함.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범위) : 신설 (내용 별첨)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10조 (공개의 가부결정)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신설)</p>	<p>제10조 (공개의 가부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집행기관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장소, 공개방법 및 수수료 금액, 납부방법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18조 (<u>다른 조례와의 관계</u>) 이 조례는 다른 관계법령에서 행정정보의 <u>공지여부</u>를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8조 (<u>예외규정</u>) ----- ----- <u>공개여부</u> <u>를 규정하고 -----</u> -----</p>

원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신설</u>)</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u>적용범위</u>) <u>'92년이후 생산, 수집된 정보는 '94년 9월1일부터 '91년이전 생산수집된 정보는 당해 정보 목록이 작성된 때부터 공개한다.</u></p> <p><u>다만, '91년이전 정보로서 이미 목록이 작성되어 있는 정보나 목록이 작성되지 않은 정보라도 당해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u></p>